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580

제출년월일 : 2014.11.2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와 건축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기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기준을 정하고,

○ 대수선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시 건축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건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함(안 제6조제5항, 제6항, 제7항)

○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문황림 2014-11-20 14:58

○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부과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함(안 제33조제1항, 제2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4. 10. 17. ~ 2014. 11. 0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도시국 건축과 문황림 2014-11-20 14:58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⑦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문황림 2014-11-20 14:58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김 경 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건축허가계장 장 광 태
	담 당 자 성명·전화	문 황 림 (행정 2915)

안전도시국 건축과 문황림 2014-11-20 14:58

[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 연립주택 : 2미터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이상

안전도시국 건축과 문황림 2014-11-20 14:58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 0.5미터 이상

안전도시국 건축과 문황림 2014-11-20 14:5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② (생략) ③ (신설)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령의 제·개정 또는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영 ---------- ---------- ---------- ---------- ---------- ---------- ----.
제6조(구성) ①~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 위원수 4분의 1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신설) ⑦ (신설)	제6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명·위촉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① ---------- 제5조의5제1항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신설)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⑦ (신설)	⑦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 --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마. (생 략)	(생 략)
바. (생 략)	(생 략)

[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	-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생 략)	(생 략)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생 략)	(생 략)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해당 ----------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	-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80

제안년월일 : 2014. 12. 09.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과 횟수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2 관련)에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대상 건축물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존 대상건축물로 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5회로 정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을 기존 별표대로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대상건축물을 정하고자 함.(별표 3)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17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17

[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 연립주택 : 2미터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이상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17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 0.5미터 이상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17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3조(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① (개정안과 같음)
<신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신설>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수정안</th></tr>
<tr>
<td>[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생 략)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td>
<td>[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td>
<td>[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개정안과 같음)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td>
</tr>
<tr>
<td>
<table>
<tr><th>대상 건축물</th><th>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th></tr>
<tr><td>가. (생략)</td><td>(생략)</td></tr>
<tr><td>나. (생략)</td><td>(생략)</td></tr>
<tr><td>다. (생략)</td><td>(생략)</td></tr>
<tr><td>라. (생략)</td><td>(생략)</td></tr>
<tr><td>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td></tr>
<tr><td>바. (생략)</td><td>(생략)</td></tr>
</table>
</td>
<td>
<table>
<tr><th>대상 건축물</th><th>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th></tr>
<tr><td>가.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나.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다.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라.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td><td>-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td></tr>
<tr><td>바.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td>
<td>
<table>
<tr><th>대상 건축물</th><th>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th></tr>
<tr><td>가. (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 같음)</td></tr>
<tr><td>나. (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 같음)</td></tr>
<tr><td>다. (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 같음)</td></tr>
<tr><td>라. (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 같음)</td></tr>
<tr><td>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td></tr>
<tr><td>바. (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 같음)</td></tr>
</table>
</td>
</tr>
</table>